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 관련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수수료의 수준 및 기준 등이 운용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8752호, 2022. 1. 11. 공포, 2022. 7. 12. 시행)됨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요건,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합리적 수수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요건(안 제13조 신설)

투자설명서 상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내용이 운용계획에 명시되어 있을 것 등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세부기준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가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안 제13조의2 신설)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에게 위험등급 및 위험수익구조, 자산배분현황 등의 정보를 서면 혹은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공하도록 함

다.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른 적립금 운용 통지(안 제13조의3 신설)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 등을 함께 통지하도록 함

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안 제13조의4 신설)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하려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변경 승인 후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사유 등에 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며, 가입자가 다른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 승인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

마.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공시(안 제13조의5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사전지정운용방법 관련하여 적립금액 및 운용현황 등을 분기에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함

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관리(안 제13조의6 신설)

1)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받은 경우 등의 사유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2) 사전지정운용방법 승인이 취소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승인취소 사유 등에 대한 통지, 3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적립금 이전 등 가입자 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함
- 3)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하여 매 3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실시하여 승인 지속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사. 수수료(안 제24조의2 신설)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별로 구분, 비용과 운용손익에 대한 고려,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혜택 제공 등 합리적 수수료 부과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수수료 부과기준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아.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 행위(안 제34조제1항제8호 신설)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운용함에 있어 제1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가입자의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등을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에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제12조의2로 하고,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6까지 및 제2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요건) ①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투자설명서 상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내용이 운용계획에 명시되어 있을 것
2. 제1호의 운용내용이 해당 집합투자증권 운용계획의 주요 운용내용일 것
3. 자산 배분이 적절하며, 투자전략이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울 것
4. 물가, 환율, 금리, 기타 경제의 중장기 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금융시장과 가입자 집단 속성에 비추어 허용되는 범위 내일 것
5. 예상 수익이 금융시장 속성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으로 확보될 것
6. 손실가능성과 예상수익이 중장기적으로 합리적 균형을 이룰 것
7. 수수료 등의 비용이 예상되는 수익에 비하여 과다하지 않을 것
8. 상시 가입이 가능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 환매가 되는 등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의2(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운용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에게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위험등급 및 위험·수익구조
2. 자산배분 현황
3. 목표 수익률 및 손실 가능성
4. 수수료 등 비용구조
5. 예금자 보호 등 가입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관한 사항
7. 사전지정운용방법 적용시 전체 퇴직연금자산의 위험도 변경 가능성
8. 제13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관한 사항
9.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승인 사항 등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는 서면 혹은 전자문서의 형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 되어야 한다.

1. 우편 발송

2.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제13조의3(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른 적립금 운용 통지) ① 법 제21조의3 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21조의3 제4항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는 사실

2. 가입자가 지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

3.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언제든지 운용방법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의 통지는 제13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제13조의4(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① 법 제21조의3제6항 또는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하려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제2항의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 사전지정운용방법과 위험도, 투자전략 등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로 갈음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변경 승인 또는 변경 보고 후 14일

이내에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 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 운용하고 있는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을 지정할 수 있다.

1.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사유

2. 변경되는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써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3.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에 대한 고용노동부 승인 또는 보고 사실

4. 법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가입자의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는 사실

5.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언제든지 운용방법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사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제13조의2제3항을 따른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른다.

④ 가입자가 제2항에 따라 다른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변경 승인을 받은 날 또는 변경 보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던 가입자의 적립금을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제13조의5(사전지정운용방법의 공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한 사전지정운용방법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대하여 분기에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1. 적립금액 및 운용현황
2. 수익률
3. 목표수익률과 실제수익률의 비교
4. 사전지정운용방법간의 비교 등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3조의6(사전지정운용방법의 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의 2제1항에 따라 승인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받은 경우
2. 제13조에 따른 승인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퇴직연금사업자가 승인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가입자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 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 운용하고 있는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한다.

1. 승인취소 사유, 해지방법 등에 대한 통지
2. 승인 받은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포함한 3가지 이상의 운용방법

에 대한 정보제공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보제공 후 가입자가 다른 운용방법을 선택할 경우 가입자의 적립금을 선택한 운용방법으로 이전

4. 제3호에 따른 적립금 이전 시 변경된 운용방법의 정보를 제13조의2를 준용하여 가입자에게 제공.

5. 승인취소로 인한 해지 수수료 등 가입자가 추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

③ 제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해지하지 않거나 다른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가입자의 적립금을 같은 위험등급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이전 운용방법에 대한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전 운용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승인한 날부터 기산하여 매 3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실시하여 승인 지속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수수료)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2. 법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

② 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별로 구분하여 부과할 것
2. 운용방법의 제시, 가입자 교육, 간사기관 업무 수행 등 해당 업무의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부과할 것
3. 적립금의 운용 손익과 관련된 업무 수행의 경우 적립금의 운용 손익을 고려하여 부과할 것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우대혜택을 제공할 것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법 제2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수수료 부과기준
2. 제1항의 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 수입 등 수수료 부과 현황
3. 제1항의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관련 자료
4. 가입자 적립금의 운용 손익

제34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제1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가입자의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나.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가입

한 가입자 간에 특정 가입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등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다.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2에 따른 정보제공
및 제13조의3과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통지를 진행한 경우

부 칙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3조(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요건)</u> <u>①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서</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u> <u>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u> <u>1. 투자설명서 상 법 제21조의2</u> <u>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u> <u>나에 해당하는 운용내용이 운</u> <u>용계획에 명시되어 있을 것</u> <u>2. 제1호의 운용내용이 해당 집</u> <u>합투자증권 운용계획의 주요</u> <u>운용내용일 것</u> <u>3. 자산 배분이 적절하며, 투자</u> <u>전략이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u> <u>울 것</u> <u>4. 물가, 환율, 금리, 기타 경제</u> <u>의 중장기 변동에 따른 손실</u> <u>가능성이 금융시장과 가입자</u> <u>집단 속성에 비추어 허용되는</u> <u>범위 내일 것</u> <u>5. 예상 수익이 금융시장 속성</u> <u>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으로</u> <u>확보될 것</u> <u>6. 손실가능성과 예상수익이 중</u> <u>장기적으로 합리적 균형을 이</u>

제13조 (생 략)
<신 설>

를 것

7. 수수료 등의 비용이 예상되는 수익에 비하여 과다하지 않을 것

8. 상시 가입이 가능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 환매가 되는 등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의2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3조의2(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에게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위험등급 및 위험·수익구조
2. 자산배분 현황
3. 목표 수익률 및 손실 가능성
4. 수수료 등 비용구조
5. 예금자 보호 등 가입자 보호

<신 설>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관한 사항

7. 사전지정운용방법 적용시 전체 퇴직연금자산의 위험도 변경 가능성

8. 제13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관한 사항

9.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승인 사항 등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는 서면 혹은 전자문서의 형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 되어야 한다.

1. 우편 발송

2.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제13조의3(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른 적립금 운용 통지) ①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퇴직연

<신 설>

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사전지
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
됨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
하여야 한다.

1.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스스
로 선정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사전
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는
사실

2. 가입자가 지정한 사전지정운
용방법에 관한 정보

3.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된 이후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언제든지 운용방법을 스
스로 정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의 통지는 제13조의2제
3항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
다.

제13조의4(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① 법 제21조의3제6항 또
는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하려
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법 제21조
의2제2항의 고용노동부장관 소
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

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 사전지정 운용방법과 위험도, 투자전략 등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로 갈음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변경 승인 또는 변경 보고 후 14일 이내에 해당 사전지정 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 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 운용하고 있는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을 지정할 수 있다.

1.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사유
2. 변경되는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써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3.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에 대한 고용노동부 승인 또는 보고 사실

<신 설>

4. 법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가입자의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
는 사실

5.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언제든지 운용
방법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
는 사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제13조의2제3항을 따른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른다.

④ 가입자가 제2항에 따라 다른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
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변경 승인을 받은 날 또는
변경 보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
으로 운용하던 가입자의 적립금
을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제13조의5(사전지정운용방법의
공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신 설>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한 사전지정운용방법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기에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1. 적립금액 및 운용현황
2. 수익률
3. 목표수익률과 실제수익률의 비교
4. 사전지정운용방법간의 비교 등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3조의6(사전지정운용방법의 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받은 경우
2. 제13조에 따른 승인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퇴직연금사업자가 승인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가입자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 운용하고 있는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한다.

1. 승인취소 사유, 해지방법 등에 대한 통지

2. 승인 받은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포함한 3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제공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보 제공 후 가입자가 다른 운용방법을 선택할 경우 가입자의 적립금을 선택한 운용방법으로 이전

4. 제3호에 따른 적립금 이전 시 변경된 운용방법의 정보를 제13조의2를 준용하여 가입자에

게 제공.

5. 승인취소로 인한 해지 수수료 등 가입자가 추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

③ 제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해지 하지 않거나 다른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가입자의 적립금을 같은 위험등급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이전 운용방법에 대한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전 운용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승인한 날부터 기산하여 매 3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실시하여 승인 지속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 설>

제24조의2(수수료) ① 법 제29조

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 업무

2. 법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 업무

② 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별로 구분하여 부과할 것

2. 운용방법의 제시, 가입자 교육, 간사기관 업무 수행 등 해당 업무의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부과할 것

3. 적립금의 운용 손익과 관련된 업무 수행의 경우 적립금의 운용 손익을 고려하여 부과할 것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등 고용노동부장관

제34조(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 행위) ① 법 제3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 7. (생략)
<신설>

이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우대혜택을 제공할 것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법 제2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수수료 부과기준
2. 제1항의 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 수입 등 수수료 부과 현황
3. 제1항의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관련 자료
4. 가입자 적립금의 운용 손익

제34조(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 행위) ① -----

-----.

1. ~ 7. (현행과 같음)
8.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제1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가입자의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② (생략)	<u>나.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 방법 에 가입한 가입자 간에 특정 가입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등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u> <u>다.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2에 따른 정보제공 및 제13조의3과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통지를 진행한 경우</u>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연 락 처	(044) 202 - 7557